

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 조제목중 "(세입.세출)"을 "(용자금의 조성 및 용도)"로 하고 동조 제1항중 "특별회계의 세입은"을 "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은"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중 "특별회계의 세출은"을 "이 자금의 용도는"으로 하고 "용자금으로 한다."를 "용자금으로 지출한다."로 한다.

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2항중 "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"를 각각 "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사업"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중 "2년거치 1년상환"을 "3년거치 2년상환"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4. 1. 1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.세출에 이입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용자 특례)①생략 ②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특별지원 금과 상환금은 <u>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</u> 세입으로 한다. ③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대부 기간은 <u>2년거치 1년상환</u> 무이자로 한다 ⑤생략</p>	<p>제9조(현행과 같음) ①현행과 같음 ② - - - - - - - - - - <u>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사업</u> - - - - - ③현행과 같음 ④ - - - - - - - - - - <u>3년거치 2년상환</u> - - - - - ⑤현행과 같음</p>
<p>제9조의2(경제작물기술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 용자특례)①생략 ②경제작물기술육성을 위한 농업계고등 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<u>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</u> 세입으로 한다. ③ - ⑤생략</p>	<p>제9조의2(현행과 같음) ①현행과 같음 ② - - - - - - - - - - <u>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사업</u> - - - - - - - - - - ③ - ⑤현행과 같음</p>